의안번호	
의 뢰 인	김형동의원
회 답 일	2024.10.24.
추계번호	24B4374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자연보호중앙연맹에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,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7,000만원(연평균 5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자연보호중앙연맹 (안 제55조의3 신설)	54	54	54	54	54	270	54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5조의3 신설 (자연보호중앙연맹)	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(이하 “연맹”이라 함)을 둠(제1항) 1. 자연환경보전의 실천을 위한 시민 참여 및 계몽 활동 2.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한 학술연구 활동 3.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실천 활동 4. 자연환경 오염·훼손 등 행위에 대한 감시	의무·재량 규정
	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55조의3 신설 (자연보호중앙연맹)	○	• 유사사례 참고 – 한국자연공원협회, 생태관광협회 지원 사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자연보호중앙연맹(안 제55조의3 신설)

❑ 개정안은 현행법에 자연보호중앙연맹(이하 "연맹"이라 함)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❑ 본 추계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보호중앙연맹[1)]에 대해 일정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○ 연맹에 대한 지원단가는 현행법에 설립 근거를 둔 2개 단체, 즉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에 대한 지원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※ [참고자료]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, 생태관광협회, 자연보호중앙연맹 일반현황 참고

1) 참고로, 환경부에 따르면 공모사업을 통해 (사)자연보호중앙연맹에 ('20년) 117백만원, ('21년) 93백만원, ('23년) 30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

[표 2] 현행법에 따른 자연보전단체 설립 근거

단체명	법적 근거
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	**법 제55조(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)**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둔다. 1.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・연구 2.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,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,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생태관광협회	**법 제55조의2(생태관광협회)** ① 생태관광 사업자,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 1.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・연구 2.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.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·정리

○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개 단체((사)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)에 모두 지원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2022~2023년으로, 1개 단체당 연평균 금액은 5,400만원 규모임[2)]

[표 3]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 국고 보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2	2023	2024	2025(안)
법정단체 직접지원	(사)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	38	38	—	—
	생태관광협회*	70	70	49	34

주: *) '생태관광협회'의 경우, 보조사업연장평가(`20.3) 결과에 따라 '21년부터 '생태관광자원이용기반' 세부사업으로 이관·반영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

2) 54백만원 = (38백만원 +70백만원)÷2

○ 따라서 환경부가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매년 5,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- 이때, 추계기간 동안 지원금액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❑ 추계결과, 환경부장관이 자연보호중앙연맹에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7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자연보호중앙연맹 경비 지원	54	54	54	54	54	270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]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, 생태관광협회, 자연보호중앙연맹 일반현황

(환경부 제출자료)

❑ (사)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

○ **(설립목적)**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·연구,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,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

<조직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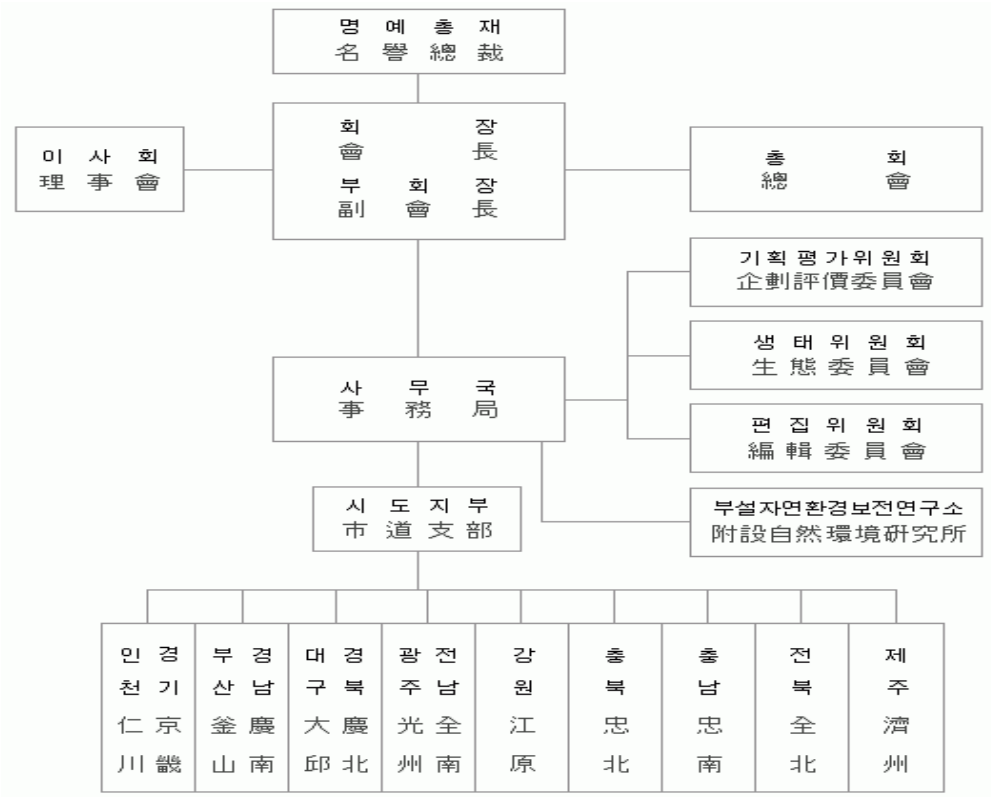

○ **(최초 허가)** 1993. 1 1.

○ **(법적 근거)**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55조

○ **(주요 사업)** 협회 정관 제4조(사업)

-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
-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
- 환경부장관이 위탁 또는 의뢰한 업무에 관한 사업
-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도모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

❑ 한국생태관광협회

○ **(설립목적)** 자연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관광의 발전을 도모

<조직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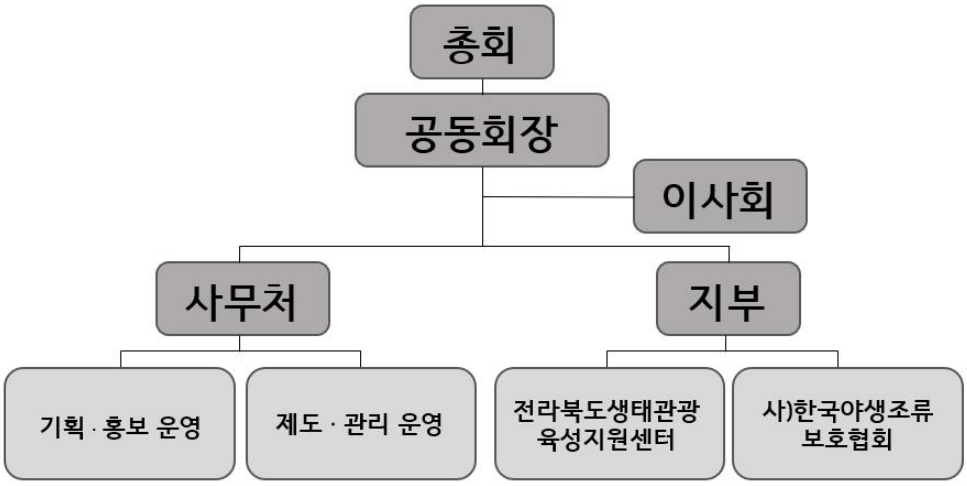

○ **(최초 허가)** 2013. 12. 30.

○ **(법적 근거)**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55조의2

○ **(주요 사업)** 협회 정관 제4조(사업)

-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조사·연구
- 생태관광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·홍보 사업
- 생태관광 관련된 사회적 공익을 위한 사업
- 생태관광 정책 개발과 제안 및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
- 생태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
- 자연환경해설사 제도운영 사무국의 업무
- 국내·외 유관 단체와의 생태관광에 관련된 연대와 협력 사업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한 생태관광과 관련한 위탁사업
-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❑ (사)자연보호중앙연맹

○ **(설립목적)**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민간 봉사단체로서 우리의 자연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소중히 보존하고자 범국민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

<조직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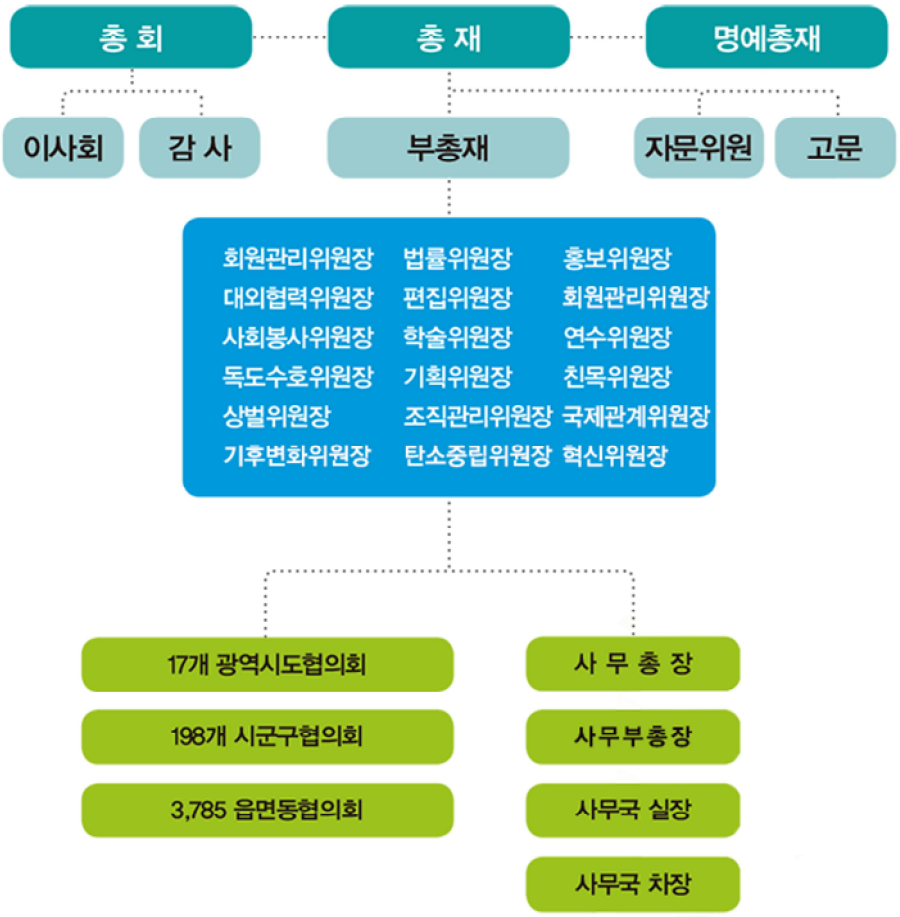

○ **(최초 허가)** 1998. 2. 28.

○ **(법적 근거)** 현재 해당없음

○ **(주요 사업내용)** 협회 정관 제5조(사업)

- 자연환경보호 범국민운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
-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지도
-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학술조사, 연구 활동 및 동 용역사업
- 자연환경보호 교육·홍보 활동 전개 및 계몽을 위한 출판사업
-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사업, 자연환경보호 유관단체 지원 및 육성, 회원의 교육, 하부 조직에 대한 지도 등